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자료제공: 농산물품질관리원)

1. 도입배경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유기축산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진입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도입
- 친환경농업육성법('06.9) 및 하위법령('07.3)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친환경인증품에 신규도입

2. 인증신청 및 절차

- 인증 신청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인증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역 출장소)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민간인증기관 34개소)에 인증 신청
 -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언급한 축산경영관련 자료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육밀도 및 축사형태 등은 농관원 고시사항을 따라야 함
 - *붙임: 1) 시행규칙 별표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2) 별지 제5호 서식(인증신청서), 3) 별지 제7호(인증품 생산 계획서), 4) 민간인증기관 34개소 주소 및 전화번호 등

3. 인증 시 검사항목

- 사료검사: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혼입여부
 - * 반추기축의 경우는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인지도 검사
- 수질검사: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음수

4. 인증품에 대한 검사항목

- 최초로 출하 하고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역 출장소) 및 민간인증기관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신청하고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출하 가능
 - 검사항목: 동물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농약 잔류검사

5. 인증품 표시

(1) 인증표시 :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다음과 같다.



※ 표시도형, 작도법, 표시문자 등 세부사항은 규칙의 별표 2와 같음

(2) 기타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붙임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라)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에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마)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바)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시용일자 등 기축분뇨의 자원화이용에 대한 내용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지축공급 농가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기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기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사육 기축과 일반기축의 병행생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p>다. 기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p>	<p>(가) 무항생제사육 농장의 기축은 일반기축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나) 무항생제사육 기축, 사료취급,약품투여 등은 일반기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p> <p>(다) 무항생제사육 기축은 일반 기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p> <p>(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2) 다른 농장에서 기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기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기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기축을 입식할 수 있다.</p> <p>(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기축인 경우(원유생산용, 알생산용과 녹용 생산용 기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p> <p>(나) 기축의 번식방법이 (1)에 적합한 경우라</p>
<p>라. 전환기간</p>	<p>(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생후부터 출하시까지 전 기간 동안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육한 기축을 무항생제축산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입식할 경우 제3호 미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p>마. 사료 및 영양관리</p>	<p>(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p> <p>(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p> <p>(나) 반추기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됨</p> <p>(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p>	<p>(1) 기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p> <p>(가) 기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p> <p>(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p>

<p>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p>	<p>(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p> <p>(2) 기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기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p> <p>(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기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p> <p>(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p> <p>(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2) 기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급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아. 기축분뇨의 처리</p>	<p>(1) 기축분뇨의 처리는 제3호자목(1) 내지 (4)를 준용한다.</p>

<붙임 2>

별지 제5호 서식(인증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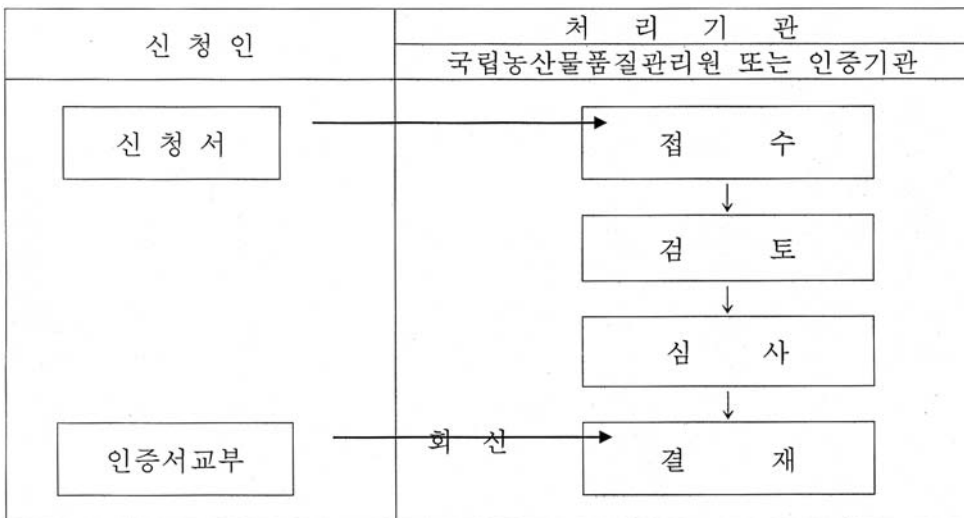
(앞 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			
신청 내용	⑥ 인증의 구분				
	⑦ 농장(포장) 소재지				
	⑧ 재배면적 (사육두수)				
	⑨ 생산 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m ²) 또는 사육두수	⑫ 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p>「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p> <p>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p>					<p>수수료</p> <p>「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p>

(뒤 쪽)

-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을 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⑫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3>

별지 제7호 서식(인증품생산계획서)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품종) :
3. 사육시설 및 사육두수

가. 사육시설

구분	면적(m ²)	위치(소재지)	비고
사육장			
목초지			
사료포			
분뇨처리시설			
기타 시설 등			

나. 사육두수

총 사육두수	규격별 사육두수		
	성축	육성축	자축

- 다. 유기(무항생제)사료 확보방안(농후·조사료 구분)
- 라. 축사구조
- 마. 토양관리(초지, 사료포)
- 바. 입식 및 번식방법

4. 생산계획량(톤·두수·천개·kg)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사육장 주변여건
6.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안
7.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대책
8. 출하계획
 - 가. 운송방법
 - 나. 도축·가공장 현황
 - 다. 생산품 판매방법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재활용품))

<붙임 4>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 관 명	지 정 일 자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제1호	(사)흙살림[충북]	'02.1.31.	043-212-0934	이태근
제2호	(유)돌나라유기[강원]	'02.5.23(수입)	033-732-4234	이연영
제3호	(사)양평환경[경기]	'02.8.12.	031-774-8095	류인수
제4호	(사)국산콩 협회[서울]	'02.11.14	02-3277-8382	배종찬
제5호	(사)한국유기농[서울]	'03.07.11	02-406-4462	정진영
제6호	(주)코약스[서울]	'03.12.15(수입)	02-6300-2978	류재희
제7호	(주)부강테크[서울]	'04.6.15(수입)	02-3453-5221	정일호
제8호	(사)정농회[서울]	'04.6.15	02-984-2145	임락경
제9호	글로벌 유농인[대구]	'05.2.14(수입)	053-326-9895	천경옥
제10호	환경대학[경기]	'05.2.25	031-670-5451	김경섭
제11호	조선대학[광주]	'05.2.25	062-230-7449	박길문
제12호	(사)올진환경[경북]	'05.6.07	054-781-0448	주상범
제13호	(주)오씨케이[서울]	'05.7.18(수입)	02-522-4351	이범섭
제14호	연암대학[충남]	'05.9.14.	041-580-1068	구태익
제15호	학사농장[전남]	'05.9.14.	061-392-2220	강 용
제16호	(주)스페이스[광주]	'05.9.14.	062-971-5085	김봉수
제17호	상지대학[강원]	'05.12.19.	033-738-7563	노병철
제18호	(사)친환경농업[제주]	'06.2.28.	064-721-2136	신상범
제19호	경북대학[대구]	'06.2.28.	053-950-6448	송재기
제20호	전남대학[광주]	'06.2.28.	062-530-2034	우정주
제21호	진주산업대학[경남]	'06.3.14.	055-751-3616	갈상완
제22호	경상대학[경남]	'06.4.03.	055-751-6247	하영래
제23호	농협중앙회[서울]	'06.4.07.	02-2127-7434	정대근
제24호	건국대학[서울]	'06.6.21.	02-450-3119	정선호
제25호	단국대학[충남]	'06.7.20.	041-550-3616	오명환
제26호	충북대학[충북]	'06.7.20.	043-261-2529	박찬수
제27호	(주)푸른환경[대구]	'06.7.20.	053-565-3909	박명화
제28호	순천대학[전남]	'06.9.14.	061-750-5471	주재우
제29호	강원대학[강원]	'06.9.14.	033-250-7268	연규석
제30호	광주친환경[광주]	'06.10.23.	062-951-3974	김영초
제31호	남도친환경[전남]	'06.10.23.	062-655-0754	박길용
제32호	(주)성농[전북]	'07.03.29.	063-545-0466	유창성
제33호	진주산업대학[전북]	'07.03.29.	063-220-2950	한태중
제34호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07.03.29.	061-381-3643	서범석
계	34기관			

※ 권역별 : 서울·경기 10, 강원 3, 충청 4, 전남 8, 영남 6, 제주 1, 전북 2

<붙임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7-5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1. 기축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가.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 중 기축의 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축종	성장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 (㎡/두(수))	축사형태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1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소	육성우	450kg이하	10.9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13.2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9.5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돼지	분만돈	두당	4.0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이하	1.0	깔짚돈사
	비육돈	60kg이상	1.5	깔짚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돈사
	옹돈	두당	10.4	깔짚돈사
닭	육계	수당	0.1	깔짚평사
	산란성계	수당	0.22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1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22	깔짚평사

양	면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산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오 리	산란오리	수당	0.55	깔짚축사
	육성오리	수당	0.3	깔짚축사
사 슴	꽃시슴	100kg이상	2.3	깔짚축사
	레드디어	170kg이상	4.6	깔짚축사
	엘크	350kg이상	9.2	깔짚축사

※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상태를 고려하여 위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함.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인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내에 추가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 비반추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건강과 생리적 요구를 고려하여 축사이외의 활동공간 확보가 권장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5호 무항생제축산물, 나목, (1)항 축사조건 중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축 종	성장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 (㎡/두(수))	축사형태 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 소	육성우	450kg이하	6.4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3.5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6.5			깔짚우사	
돼 지	분만돈	두당	3.9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이하	0.6	깔짚·슬러리 돈사
	비육돈	60kg이상	0.9	깔짚·슬러리 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 돈사
	옹돈	두당	9.7	깔짚·슬러리 돈사

닭	육계	수당	0.042	케이지
			0.046	깔짚평사(무창)
			0.066	깔짚평사(개방)
	산란성계	수당	0.042	케이지
			0.11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025	케이지
0.06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11	깔짚평사
양	면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산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오리	산란오리	수당	0.28	깔짚축사
	육성오리	수당	0.2	깔짚축사
사슴	꽃사슴	100kg이상	2.3	깔짚축사
	레드디어	170kg이상	4.6	깔짚축사
	엘크	350kg이상	9.2	깔짚축사

2. 산란계의 일조시간 연장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제(가), 7)의 자연 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자연 일조시간이 14시간을 넘을 때에는 인공광으로 자연 일조시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 일조시간이 1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인공광을 포함하여 일조시간이 총 1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확보면적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다목, (1)항에 적용되는 초식가축의 축종별 두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지, 사료포는 임차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한 생산지도 재배면적에 포함한다.

- (1) 한육우(생체 400kg 기준) : 초지 2,475㎡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825㎡
- (2) 젖소(생체 600kg 기준) : 초지 3,960㎡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1,320㎡
- (3) 면·산양(생체 30kg 기준) : 초지 198㎡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66㎡
- (4) 사슴(생체 100kg 기준) : 초지 660㎡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220㎡

다만, 축종별 기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재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포 면적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m²/두, 젖소는 916m²/두 이상의 초지 또는 사료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시 사료 공급비율 확대 기준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마목, (2)항의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마목, (1)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의 급여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5호.무항생제축산물, 마목, (2)항의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별표3의 제5호.무항생제축산물, 마목, (1)항에서 규정한 무항생제사료의 급여 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다.

5. 사료내 GMO 함유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마목 (4)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3%내에서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유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20호)은 폐지한다.